

2021년도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9. 29.(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73건(안건번호 제2021-131406호~13281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31406호~131418호(순번 1번~13번)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31419호~131421호(순번 14번~16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24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27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3번은 민원인 4명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카페에서 다수의 방송 및 영화 불법복제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

는 27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1번은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 ■■■ ■■■■ ■■■■’ 더빙판의 전반부 60분을 제공 중임. (네이버 영화 정보 검색결과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은 총 103분이며, 후반부 43분을 추가로 제공 중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특별히 없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극장 개봉을 위하여 제작되어 이후 권리자의 계열사 OTT 서비스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 중인 영상저작물을 오로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게시 중인 사실이 인정됨. 비록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약 2/3에 달하는 분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봉한 지 10년이 넘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조회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법 시장의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점이 분명하므로, 해당 부분의 중요성이 낮다거나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더불어 심의대상 블로그에서 동일한 형태의 불법복제물이 다수 확인되는바, 일반적인 단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사안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를 2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게시하였으나, 1개의 영상은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현재 재생이 중지된 상태임.

(순번 8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인 약 123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등 콘텐츠별로 게시판을 구성하여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는 “■■■ ■■■■ ■■■ ■■■■ ■■■ ■■■■ ■■■■ ■■■■ ■■■ ■■■■ ■■■■”라고 안내하고 있는바, 게시자 본인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순번 2번~13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순번 8번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 ■■■■ ■■■■ ■■■■ ■■■ ■■■■ ■■■■ ■■■ ■■■■ ■■■■”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게시판의 ‘■■■■■ ■■■■■■’ 게시물을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동일한 게시판의 다른 게시물에도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불법복제물을 게시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으로 보임. 사안의 게시자는 기존에도 같은 형태로 블로그를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다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블로그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새롭게 운영 중인 심의

대상 블로그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등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 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불법복제물을 일괄 삭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이는 심의대상 블로그의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에게 불법복제물의 원활한 이용을 바란다면 저작권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인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순번 1번의 경우, 현재 해당 저작물이 합법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권리자의 계열사인 '■■■'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E 위원: 순번 1번의 경우, OTT 서비스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순번 2번~13번 역시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결 의견임.
- C, A, D, B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3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번~16번은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 등을 각 판매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3건임. (순번 16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6화를 30 포

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300원에 대여, 600원에 소장 가능함.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4번~16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7번~140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 2,24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고독한 미식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1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고독한 미식가'를 56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시즌9의 9화 전체 분량인 약 29분을 mp4 파일, 스트리밍 형식

으로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TV도쿄에서 2021. 7. 9. ~ 9. 24. 총 12화 방영함.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화당 1,100원에 대여 가능하며, 웨이브 등 OTT 서비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음악 'WANT'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90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WANT'를 55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해당 가수의 전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53개의 앨범을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특정된 저작물은 해당 앨범 중 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2019. 2. 11.에 발매한 국내 댄스 음악이며,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영화 '프리 가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14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프리 가이'를 33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09분을 mkv 파일, 스트리밍 형식으로 각각 제공함. 2021. 8. 11.에 개봉한 미국 영화이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0,900원에 예약 구매 가능함.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17번~1406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7번~140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31406호~132811호(순번 1번~1406번)는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6.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